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68

발의연월일: 2022. 4. 8

발 의 자:정점식·김태흠·박덕흠

김정재 · 안병길 · 김태호

김용판 · 김영식 · 이채익

조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초기 계획 대비 신청저조에 따른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한 경영이양직불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 령을 확대·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 4조 및 제15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유지할 것"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시점부터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읍·면·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확인하고 그확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동장"을 "신청한 어업인"으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등을 5년으로 한다.
- 2.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	시행)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	
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	1
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	
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u>유지할 것</u>	<u>유지할 것.</u>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
	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시
	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
	격을 유지할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u>읍·면·동장</u>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를 <u>확인하고</u> 그 확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u>읍·면·동장</u>에게 알려야한다.
-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 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생략)

신청) ①
특별자치도지
<u>사등</u>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u>확인하여야</u>
<u>한다.</u>
③
<u>신청한 어업인</u>
④ <u><</u> 삭 제>

⑤ (현행과 같음)